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6. 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9년 5월 21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26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9년 5월 27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주차문화과장 김광태)

가. 개 정 이 유

-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·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·다등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,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,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함.(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가목)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함(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라목)

-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,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음(안 별표1의 비고 제14호)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음(안 별표1의 비고 제15호)
- 다등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음(안 별표1의 비고 제16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·다등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,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,
-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하였으며(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가목)
- 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하였고(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라목)
-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,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(안 별표1의 비고 제14호)
- 또한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

3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(안 별표1의 비고 제15호)

- 다등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(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)
- 이상과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,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“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등의 관련법 및 서울시 방침에 의거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관련 규정 4개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고 현 조례 일부의 내용과 용어를 이미 개정된 법규정에 맞춰 고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5·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자 함(별표 1의 6호 라목 신설)

나. 『공직선거법』 제6조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「투표참여확인증」을 제출하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,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별표 1의 14호 신설)

다.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서 구매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하여 주고자 함(별표 1의 15호 신설)

라. 「다둥이행복카드」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해 주고자 함(별표 1의 16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,
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
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
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공영주차장할인 서울시방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필요없음.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09. 4. 2 ~ 4. 22, 20일) 결과 :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<비고>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외의 본문 중 “국가유공자 및 장애인”을 “**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**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
- 라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·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
별표 1 <비고>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2,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.
- 15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

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.

16.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(단위: 원 - 1구획당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구분</th> <th colspan="4">노상주차장</th> <th colspan="3">노외주차장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1회 주차시 10분당</th> <th rowspan="2">1일 주차권</th> <th colspan="2">월정기권</th> <th rowspan="2">1회 주차시 10분당</th> <th colspan="2">월정기권</th> </tr> <tr> <th>주간</th> <th>야간</th> <th>주간</th> <th>야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지</td> <td>1,000</td> <td>20,000</td> <td>200,000</td> <td>-</td> <td>800</td> <td>250,000</td> <td>100,000</td> </tr> <tr> <td>2급지</td> <td>500</td> <td>15,000</td> <td>100,000</td> <td>-</td> <td>500</td> <td>180,000</td> <td>60,000</td> </tr> <tr> <td>3급지</td> <td>300</td> <td>9,000</td> <td>80,000</td> <td>-</td> <td>300</td> <td>100,000</td> <td>40,000</td> </tr> <tr> <td>4급지</td> <td>200</td> <td>6,000</td> <td>50,000</td> <td>-</td> <td>200</td> <td>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</td> <td>20,000</td> </tr> <tr> <td>5급지</td> <td>100</td> <td>3,000</td> <td>30,000</td> <td>20,000</td> <td>100</td> <td>30,000</td> <td>2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% 이하로 하며,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.</p> <p><비고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다음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 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</p> <p>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</p> <p>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</p>					구분	노상주차장				노외주차장			1회 주차시 10분당	1일 주차권	월정기권		1회 주차시 10분당	월정기권		주간	야간	주간	야간	1급지	1,000	20,000	200,000	-	800	250,000	100,000	2급지	500	15,000	100,000	-	500	180,000	60,000	3급지	300	9,000	80,000	-	300	100,000	40,000	4급지	200	6,000	50,000	-	200	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	5급지	100	3,00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</p> <p><비고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 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</p> <p>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 및제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</p> <p>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</p>		
구분	노상주차장					노외주차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회 주차시 10분당	1일 주차권	월정기권			1회 주차시 10분당	월정기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주간	야간	주간		야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지	1,000	20,000	200,000	-	800	250,000	1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급지	500	15,000	100,000	-	500	180,000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지	300	9,000	80,000	-	300	100,000	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지	200	6,000	50,000	-	200	환승목적 주차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지	100	3,00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7.~13 (생략)	<p>〈신설〉 라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제 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·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</p>
	<p>7.~13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신설〉 14.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2,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.</p>
	<p>〈신설〉 15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.</p>
	<p>〈신설〉 16. 다등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</p>